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견인 및 피견인차량 보관업무규정

제 정 2004. 11. 8 제 20 호
제 정 2013. 11. 20 제220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반환 등에 관하여 성동구청장이 위탁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제도) 이사장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는 취업규정이 정한 근무시간을, 보관 및 반환업무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견인, 보관 및 반환

제4조(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부착하여 견인 지시한 차량을 견인한다.<개정 2013.11.20>

제5조(의무) ①업무에 따른 기본의무로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은 물론 구청장, 경찰서장이 요청한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하여야 한다.

②성동구청장이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견인증 또는 피견인 차량 보관시 피견인 차량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견인증은 물론 견인착수 전 또는 견인종료 후라도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견인 차량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관리책임)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업무는 피견인 차량 보관소 담당이 관장 한다

제8조(접수) ①피견인차량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에서 피견인 차량을 인수하는 때에는 견인차량의 운전원 또는 승무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수증에는 차종, 견인장소, 인수시간, 인계자, 차량의 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및 반환) ①견인된 차량은 보관소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견인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원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견인료, 보관료 등을 징수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견인차량의 접수 및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24시간 상주시켜야 한다.

제10조(미 반환차량 조치) ①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관장

견인차량보관규정

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②15일 이상이 지나도 반환해 가지 않는 차량은 성동구청장에게 통보와 동시에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재차 통보하여야 한다.

③견인조치 후 1개월이 경과한 차량은 성동구청장에게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를 요청함과 동시에 제비용에 대한 납부고지 및 독촉 후 미납시 성동구청에 서면으로 강제징수조치를 요청한다.

제11조(보관료 등) ①견인된 차량은 접수대장에 등재된 시각부터 가산하여 소정의 금전 납부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보관료, 견인료의 징수기준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납) ①견인료 등 제비용의 수납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수납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견인료, 보관료 등 직접 징수케 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③수납된 현금 등은 은행통장에 입금 관리한다.

제13조(견인료 및 보관료 처리)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성동구청에 보고 후 고지서에 의한 납부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14조(출입차량통제) 보관소 출입문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견인된 차량의 출입상황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5조(보고) ①보관소 담당은 견인된 차량현황을 공단에 매일 유선 보고하고 주 1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이사장은 견인실적을 반월보로 하여 1일부터 15일까지, 실적은 그달 20일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의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성동구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6조(종사자의 의무)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차량이 손상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0.)

(시행일) 이 규정은 2013.11.20일부터 시행한다.